

연구사업관리전문가제도 운영규정

제 정 2010. 09. 17.
일부개정 2011. 08. 04.
일부개정 2013. 03. 05.
일부개정 2016. 08. 18.
일부개정 2020. 04. 08.
개 정 2023. 02.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7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연구사업관리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위 구분) 연구사업관리전문가는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획·평가·관리 전주기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연구개발 민간전문가 제도로써, 진흥원 관련 규정에 따라 임용된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PM (Program Manager, 이하 ‘PM’이라 한다)”은 연구개발혁신본부 본부장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한다.
2. “PD (Project Director, 이하 ‘PD’라 한다)”는 연구개발혁신본부에 소속되고, 별도의 직위를 갖지 않으며, 분야별 연구개발사업 기획 세부사항을 총괄한다.

제3조(업무)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PM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연구개발사업 기획 · 관리의 총괄 · 조정
 - 나.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및 배분의 총괄 · 조정
 - 다. PD와 관련부서의 업무 총괄·조정
 - 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의 총괄 · 조정
 - 마. 연구개발사업의 종합적인 성과평가
 - 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대외협력 업무의 총괄 · 조정
 - 사. 그 밖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업무에 관한 사항
2. PD는 PM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 나. 연구동향 및 전망에 대한 조사·분석
- 다. 기획과제 추진 및 관리
- 라.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대외협력 업무
- 마. 그 밖에 진흥원장이 정한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권한과 책임) PM은 제3조의 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다음 각 호의 원칙 및 그 밖에 일반적인 윤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PM은 연구 부정행위의 방지 등 올바른 연구윤리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PM은 개인적 신념이나 사회적 지위를 떠나 보건복지부 주관 연구개발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3. PM은 평가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PM은 고의로 평가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연구자에 따라 유·불리한 평가단위에서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부당한 권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PM은 평가자나 신청자의 인적사항 또는 평가결과 등 직무상 획득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그 밖의 학계, 연구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윤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자격요건)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임용 자격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6조(임용방법) ① 연구사업관리전문가는 공개모집을 통해 진흥원장이 채용 또는 파견 받아 임용한다. 다만, 정부 주무부처의 전문가가 파견되거나 내부직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그 절차와 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 ② 채용의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진흥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③ 파견의 경우 공개 모집된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1. 심사위원회는 학계·연구계·산업계 등의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3. 심사위원회는 제5조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을 심사한 후 복수의 후보를 진흥원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임용 예정 인원의 정수로 추천할 수 있다.
4.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적격자의 수가 임용 예정 인원의 정수 미만인 경우, 또는 진흥원장이 추천된 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임기 및 재임용) ①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연임, 단축 등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연임 여부는 진흥원장이 정하되, 연임 기간은 1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PM이 임기 중 퇴임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되어, 임용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 파견의 경우 원 소속기관이 변경될 시 파견 유지 여부는 진흥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원 소속기관에서 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와 동시에 진흥원과의 파견관계도 종료된다.

제8조(복무 및 사업참여) ① PM은 진흥원의 복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PM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PM은 진흥원에 상근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진흥원장은 PM에 대해 주당 1일을 연구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임용 이전에 협의에 의하여 원 소속기관의 근무조건에 따라 연구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PM은 임기 중 과학기술 연구기획 또는 정책연구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주관 신규 연구 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PM이 임용 당시 수행 중인 연구과제는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연구기간 종료 시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신분 변경 등) ① PM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재직기간 중 「인사규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② PM이 제4조 또는 제8조제1항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진흥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PM평가위원회의 면직권고가 있는 경우 진흥원장은 해당 PM을 면직할 수 있다.

제10조(처우 등) ① 진흥원장은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급여, 수당 등 세부사항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외부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PM의 급여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원 소속기관과 급여보전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③ 연구사업관리전문가에 대하여 연구수당, 임기 중 연구실 운영보조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원 소속기관이 진흥원 소재지 이외의 지역인 경우 주거비용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 ④ PD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⑤ 국내외 출장 등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연도 예산 집행지침과 진흥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자율성 보장) 진흥원장은 PM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1. 분야별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추진
2.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과제선정, 진도관리, 결과평가 및 성과관리
3. 사업별·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법의 개발 및 적용

제12조(독립성 보장) 진흥원장은 PM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
2. 연구비집행, 진도관리, 결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계획수립·이행

제13조(중립성 보장) 진흥원장은 PM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중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과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2. 우수평가 인력의 발굴과 활용
3. 연구개발과제 평가과정의 직접 참여

제14조(연구위원) ① PM의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연구개발혁신본부에 10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위원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진흥원장이 위촉한다.
- ③ 연구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진흥원장이 그 절차와 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PM평가위원회) ①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걸쳐 PM의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PM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합법성
2. 연구개발과제 평가 과정의 적법성
3.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4. 연구사업관리의 성과
5. 연구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PM의 면직
건의

7. 그 밖에 PM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PM평가위원회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당연직 위원장), 보건복지부 보건
산업정책국장, 진흥원 기획이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이외의 외부위원은 진흥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규정의 준용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의 내규에 따른다.

제17조(PM의 직무대행 등) PM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재 시 진흥
원장은 그 직위에 부합하는 직원에게 겸임 또는 직무대행을 명할 수 있다.

부 칙(2010.09.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적용)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임용되어 현재 재직중인 개방형 직위의 본부장 및
단장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11.08.04.)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3.05.)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8.18.)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4.08.)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2.22.)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연구사업관리전문가 임용 자격요건 <신설 2020.04.08.>

연구사업관리전문가 임용 자격요건

전문가 구분	자격요건	비고
PM	<p>해당 학문분야의 학문적 탁월성을 지닌 전문가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경력이나 연구행정경력이 20년 이상 나. 대학의 정교수 다. 의료인 면허 소지자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 또는 연구행정경력이 20년 이상 라.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연구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경력 및 실적 등에 비추어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전문성과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D	<p>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실무전략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경력이나 연구행정경력이 10년 이상 나. 대학의 조교수 이상 다. 의료인 면허 소지자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 또는 연구행정경력이 10년 이상 라.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연구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경력 및 실적 등에 비추어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전문성과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 자격요건에서 말하는 '연구경력'이라 함은 대학(교) 및 공공·민간 연구소 등에서의 해당 분야 연구 수행경력을 의미하고, '연구행정경력'이라 함은 대학(교), 공공·민간 연구소 및 연구지원기관 등에서의 연구 수행과 관련된 행정경력을 의미함